

# **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19. 7.  
발 의 자 : 정혜경 의원 외 1명

## **1. 수정이유**

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설치에 관한 내용이 생략되어 센터의 명칭 및 설치에 관한 조문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.

## **2. 주요내용**

제2조제1호 중 “국민” 을 “구민” 으로 한다.

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,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명칭 및 설치)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,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.

# **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국민” 을 “구민” 으로 한다.

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,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명칭 및 설치)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,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